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(우)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(수서동,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) / Tel 02-567-1307/ Fax 02-567-1337

www.assi.or.kr E-Mail : assi1307@naver.com 담당 : 박용복부장 (H·P) 010-8688-5619

문서번호 2018 - 94호

시행일자 2018. 10. 16.

수 신 국토교통부장관

참 조 기술기준과장

선			지	
결			시	
접	일자		결	
	시간		재	
수	번호		공	
처	리	과	람	
담	당	자		

제 목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협회 입장파 개선요청

1.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.
2. 국토교통부(이하‘국토부’)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설계, 감리, 안전진단 등 건설 기술용역 평가시 “기술 배점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”는 사유로 「사업수행능력(PQ)」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습니다.

구분	고시금액(2.1억) 미만인 용역	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	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인 용역	30억원 이상인 용역
계	100	100	100	100
기술배점	30	50→70	70→80	80
가격배점	70	50→30	30→20	20

그러나, 이러한 개정이 안전진단용역의 특성과 구체적인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우리 협회는 공문(시협 2017-86호, 2017.12.28.)을 통하여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.

3.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금번에도 이해당사자인 우리 협회와의 의견수렴없이 “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자들의 고용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고 참여기술자 평가, 용역수행실적 평가, 신용도 평가,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, 업무 중복도 평가 등을 개선한다”는 사유로 금번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

부개정(안)을 행정예고(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8-1245호, 2018.9.27.)한 바 있습니다.

4. 이는 안전진단 분야 업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약 10,000여명의 기술자의 권익과 생존을 침해함은 물론, ①공정한 경쟁 위배, ②경제력 집중(독점)과 과점 심화, ③부당공동행위(담합)유발, ④관련 산업 발전저해 등 입찰시장을 왜곡시켜 아래와 같이 법이 지향해야 할 논리성, 공정성, 일관성, 발전성을 훼손함으로써 ‘안전진단전문기관’(이하 ‘업체’)의 원성이 많은 바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「사업수행능력(PQ) 평가기준」의 문제점

- (1) 「사업수행능력(PQ) 평가기준」 중 당해용역 수행 능력을 당초, 입찰고시금액 2.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대해 50%,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에 대해 70%를 적용 해왔으나, 각각 70%, 80%로 상향, 경쟁 업체 수를 축소시킴으로써 소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개를 발주할 경우 결과적으로 입찰 경쟁율이 1:1인 경우가 되게하여 담합이 가능토록 함
- (2) 안전진단용역의 특성 상 참여기술자의 경력이나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, 신용도, 기술개발 투자실적, 업무중첩도 등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역량 평가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음에도 안전진단이나 보수·보강과 관련이 없는 설계나 시공관련 신기술·특허를 보유한 ‘엔지니어링활동주체’(이하 ‘설계사’)가 입찰에 유리한 상황임. 또한 대부분의 ‘설계사’가 신용등급 ‘A’등급이나 ‘업체’는 ‘B’등급으로서 불리한 여건임.
- (3) ‘한국철도공사’ 같은 발주자는 같은 ‘교량 및 터널’ 시설물일지라도 철도분야 수행기술자만 100% 인정하고 도로분야는 50%만 인정하는 등 많은 발주자가 관리주체 출신 기술자를 우대하여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술자의 육성을 가로막고 있음.
- (4) 5년간 10억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만점을 받으려면 매년 2억원 이상 5년간 수주를 해야 하므로 기술력은 있으나 실적이 작은 업체는 사실상 PQ용역 참여가 불가능함.
- (5) ‘시설물 안전법’ 도입 이후에 ‘업체’에서 23년동안 안전진단 업무

를 계속해온 기술자라도 해당분야의 최고점수를 받을 수 없으나 재직시 실제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감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료출신이나 해당 관리주체 관료출신자에게 경력을 인정토록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을 양산하여 이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흐리게 하고 불법 하도급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음.

(6) ‘기술자 업무 중첩도’를 용역 착수 후 즉시 ‘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’에서 관리하는 ‘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(CEMS)’에 사업책임기술자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더 많은 수주를 위하여 고의로 입력을 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발주 기관에서도 확인(또는 승인) 입력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용됨으로써 특정업체가 계속하여 부당하게 낙찰되는 부작용이 있음.

(7)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가 최고점수에 비해 경력기간이 부조화되어 있음.

나. 대책과 개선요청 사항

(1) 안전진단분야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용역당 3:1 이상의 경쟁률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술배점:가격배점을 최소한 당초대로 고시금액이 2.1억원~10억원미만인 용역에서 50:50으로, 10억원~30억원 미만인 용역에서 70:30으로 유지되어야 함.

(2) 발주자별로 참여기술자의 경력과 실적,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발주자 출신 기술자를 우대하는 부작용이 있는 바 실제 기술 용역업무를 하지 않는 용역감독 등의 실적은 50% 미만으로 평가토록 하고 ‘국토부’가 이 부분의 상한선을 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.

(3) 공급 측면에서 충분한 입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대다수의 건전한 ‘업체’를 위하여 사업책임기술자의 점수를 낮추고 분야별책임기술자와 최고점수와 경력기간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야 함.

(4) 현재 ‘국토부’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야별 참여기술자까지 업무중첩도를 넣을 경우 몇 개 회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특정회사의 시장 독점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.(예,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가 85%, 비주관사가 15% 지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비율만큼 불리함)

(5) '건설 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'에 의한 '업무중첩도'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질서가 유지되도록 조치가 필요함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

